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9.8.26.(월) 14:00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담 당 자	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652)
	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 효 선(02-2100-2801)		배 수 암 사무관 (02-2100-2802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김 정 태 부국장 (02-3145-7570)

제 목 :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중
- 증권업 부문 86건 우선 심의, 19건 개선 결정

- ◆ **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'19.8.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업 부문 86건*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**
- *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상 규제 80건 + 미등록 규제 6건
- **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(58건) 및 심층심의(28건) 대상으로 구분하고,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(67.9%)을 개선**
-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하여 신용공여,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
- ◆ **'19년 하반기 중 자산운용업 분야, 회계·공시 분야,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·심의할 계획**

1 추진경과

- 금융위는 5.3일 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」를 개최하여, 총 1,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, 개선작업을 추진 중
 - ☞ '19.5.7일 보도자료(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」 개최) 및 '19.7.19일 보도자료(「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: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») 참조
-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한 후, 민간 전문가 중심의 「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*」에서 검증·심사
 - *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, 규제·금융정책 전문가,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(9명)

□ 자본시장부문은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행정규칙상 규제가 총 330건이며, 증권업, 자산운용업, 회계·공시, 자본시장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

○ 아울러, '18.11월 발표한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과제별 T/F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

⇒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(미등록 6건 포함)를 우선 심의(8.23일)

【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】

- (일시 및 장소) `19.8.23.(금), 10:30 ~ 11:30,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위원장), 사무처장, 기획조정관, 자본시장정책관, 민간위원 6인 등 총 10인
- (주요 내용) 증권업 분야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

2 증권업 분야 추진성과

□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*(58건) 및 심층심의(28건) 대상으로 구분하고,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(67.9%)을 개선하기로 결정

* 용어의 정의 조항, 제재 근거 조항,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,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

대상규제	⇒	선행 심의	⇒	심층 심의	개선(A)	존치(B)	개선율(=A/[A+B])
86건		58건		28건	19건	9건	67.9%

□ 인가·등록, 신용공여,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

○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음

○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(우선허용·사후규제)에 입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

<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>

구분	대상 규제	선행 심의	심층 심의		
			개선 (A)	존치 (B)	개선율 (=A/[A+B])
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(진입)	5	0	2	3	40.0%
신용공여(담보비율, 신용공여 한도 등)	14	2	6	6	50.0%
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 (정보교류 차단, 투자권유 방법, 불건전 영업행위, 전문투자자의 기준 등)	21	16	5	0	100%
장외거래(채권의 장외거래, 환매조건부매매 등)	29	23	6	0	100%
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(합병·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, 재무건전성 유지,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)	17	17	0	0	0%
합계	86	58	19	9	67.9%

3 개선과제 주요내용

가.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

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2-6조)

- (현행)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·물적요건,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
- (개선)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(3~5년→1~3년 경력자)하고,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

* 「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」 既 발표('19.6.25.)

정보교류 차단(차이니즈월)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(금융투자업규정 제4-6조·제4-7조)

- (현행)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
- (개선)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

* 「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」 既 발표('19.5.27.)

□ **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** (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의2·제1-8조)

- **(현행)**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**요건***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 전문투자자군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* 투자경험 요건 & 손실감내능력 요건(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) 충족

- **(개선)**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**완화**(‘19.8.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, 11.21일 시행)

* 「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」 既 발표(‘19.1.21.)

* 투자경험 요건(금융투자계좌 1년 이상, 국채 등 초저위험상품 제외 잔고 5천만원)과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
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(부부합산시 1.5억원) 또는 순자산 5억원(거주주택 제외) 이상
②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(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,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)

나. 신용공여 업무 관련

□ **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신용공여*시 투자자에게 청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** (금융투자업규정 제4-25조)

* 신용거래용자, 신용거래대주, 예탁증권담보용자, 청약자금대출

- **(현행)**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**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%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** 획일적으로 규제

*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%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

- **(개선)** **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,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,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**

□ **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 완화** (금융투자업규정 제4-28조)

- **(현행)**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**일률적으로 규정*함**에 따라 투자자의 **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**

* 처분제비용 → 연체이자 → 이자 → 채무원금

- **(개선)**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**이자(연체이자 포함)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**

□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 제고 (금융투자업규정 제4-31조)

○ (현행)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

* '19.8.23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은 4.0~11.0% 수준

○ (개선) 조달금리,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

다. 기타 개선사항

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 완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2-10조)

○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 생략

□ 투자광고의 내용·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4-12조)

○ 투자광고의 내용·방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부담 완화

* (예)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(회사 이미지 광고,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)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(협회 사전심사 생략)

4 향후 추진계획

가.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

□ 금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(19건)는 원칙적으로 '19.12월말 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

○ 다만,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*,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 추진

* (예)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등

-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(등록규제 250건 등)는 '19.9월 자산운용업 분야, 10월 회계·공시 분야,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·심의
-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

나.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

- '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(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)를 전수 점검·정비

검토시기	~'19.5월	'19.6~12월	'20년 상반기		'20년 하반기			합계
구분	보험	자본시장	금융산업 (보험제외)	전자금융/ 신용정보	금융 제도	자금 세탁	소비자 보호	
행정규칙	1	9	5	3	8	4	3	33
규제사무 (국조실 등록 기준)	92	330	166	59	60	77	5	789

<별첨>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: 증권업 분야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